

공고 및 고시

◎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-20호

공업발전법 제14조 및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운용요령(산업자원부고시 제1999-8호) 제4조의 규정에 따라 '99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9. 1. 21
산업자원부장관

'99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지침

1. '99년도 지원규모 : 2,867억원

- 가. 자본재시제품 개발사업 : 2,260억원
- 나.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: 607억원

(4)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신기술 및 신제품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개발사업

2. 융자대상

가. 자본재시제품 개발사업

- (1) 산업자원부장관이 자본재산업 육성과 관련 고시한 전략품목의 개발사업
- (2)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 사업
- (3) 산업디자인 개발사업

나.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

- (1)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(통상산업부고시 제1996-389호)에 해당하는 기술제품 개발사업
- (2)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 사업
- (3)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

3. 융자조건 및 한도

현물담보의 경우

대출금리	융자기간	융자비율	과제당한도액
연 7.0%	8년 (3년거치 5년분할 상환)	소요자금의 80%	30억원

※ 대출금리는 시중실세금리 추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
□ 기술담보의 경우

대출금리	용자기간
연 7.5%	5년 (2년거치 3년분할 상환)

'99년에는 기술담보대상사업(산업기반기금, 산업기술개발용자금,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)중 500억원 한도에서 기술담보사업을 시행

4. 용자사업 취급기관

- 가. 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 : 한국기계공업진흥회, 한국전자산업진흥회, 한국전기공업진흥회, 한국섬유산업연합회, 산업디자인진흥원,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,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

- 나.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: 생산기술연구원(산업기술정책연구소), 한국전자산업진흥회(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부문에 한함)

5. 용자신청

- 가. 신청기간 : 연중 수시
- 나. 신청·접수기간 : 상기 용자사업 취급기관
- 다. 취급은행 : 중소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과 자금대여약정을 체결한 한국산업은행,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
기술담보취급은행 : 용자취급은행과 동일
- 라. 신청서류 : 용자신청서 2부, 기타 참고자료

※ 기술담보가치 평가 신청

신청기간	신청·접수기관	취급은행	신청서류
수시	산업기술정책연구소	동일	기술담보가치평가신청서 3부

6. 지원 우대조치

-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전년도 총 매출액의 5 퍼센트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(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)가 설치된 중소기업
- 수급기업간 개발을 위한 사전협약이 이루어져 수요가 보장된 품목
- 산·학·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
-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되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 개발하는 경우

7. 신청자 의무사항

- 가. 대출완료 기한
 - 자금을 용자지원 받기로 확정된 자(이하 용자사업자라 한다)는 산업자원부장관의 기한연장조치가 없는 한 확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(기술담보용자금은 3개월로 한다).
- 나. 수수료 납부
 - 용자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취급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
다. 목적외 사용금지

- 용자사업자는 그 용자받은 자금을 용자받은 때에 지정된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.

라. 구분계리

- 용자사업자는 해당자금을 타자금과 구분

계리하여야 한다.

마. 보고의무

- 용자사업자는 산업기술개발용자사업운용요령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보고사항을 정해진 기일내에 취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◎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-13호

산업기반기금운용규정(산업자원부고시 제1998-11호, '98. 3. 21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1999년 2월 1일
산업자원부장관

산업기반기금운용규정중 개정

□ 제4조(운용심의회)의 설치

- ①항의 “(유통합리화사업은 제외)”는 삭제한다.
- ②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운용심의회는 용자신청사업자의 실제 대출가능성을 평가할 신용보증기관(부득이한 경우 기타 금융기관)의 전문가 및 해당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업, 대학, 연구소 등의 전문가 중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며, 기타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취급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.”

□ 제9조(용자사업자 등의 선정)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①취급기관의 장은 신청마감 후 30일 이내에

신청된 사업을 심의 후 용자사업자 및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고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용자사업자 및 예비사업자로 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②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용자사업자 및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심의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.

1. 사업의 목표, 내용, 수행방법 및 타당성
2. 설치시설의 중요도
3. 생산성 향상도
4. 설비투자에 대한 자기자금 비율
5. 담보능력 등 실제 대출 가능성
6. 기타 취급기관의 장이 정한 내용

③취급기관의 장은 용자사업자 등의 선정시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「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

위」 또는 「자본재전략품목」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하여야 한다.

④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 등의 선정시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, 산업기반취약지역 및 기타 수도권 이외지역 소재 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하여야 한다.

⑤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 등의 선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융자신청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□ 제11조(기금의 구분)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자별 기금지원액 결정시 자금용도를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야 하며, 융자사업자별 운전자금은 지원액의 1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그 한도를 정할 수 있다. 다만, 일부 사업 부문에 대한 운전자금 한도를 산업기반기금운용·관리요령에서 별도로 규정할 경우 이에 따른다.”

□ 제15조(융자기금의 대출) ①, ②, ⑤, ⑥, ⑦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①융자사업자는 해당 취급기관의 사업자확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대출을 시작하고, 각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6개월(단, 유통합리화사업은 10개월) 이하의 기간 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.

②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융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(수입시설의 도입, 토목·건축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수행 등)로 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출기한연장신청서에 기한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

2월의 범위내에서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⑤취급은행의 장은 시설도입 전이더라도 융자추천금액의 일정비율내에서 선금금 또는 계약금을 관계증빙서류만 확인하고 우선 지급할 수 있다.

⑥취급은행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요청시 시설자금 지원전이더라도 운전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시설자금 지원완료시 운전자금의 지원비율을 제11조에서 정한 범위내로 하여야 한다.

⑦융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대출하지 않고 대출기한을 경과하거나 대출기한 종료시점에 임박해서 대출을 포기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할 경우 취급기관의 장은 향후 1년간 융자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동 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다.”

□ 제24조(사업 성과분석), 제25조(자료의 제공 요청 등) “산업연구원장”은 “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”으로 한다.

□ 제28조(보고의무) ①, ②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①취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수수료 운용예산 및 결산보고서(익년도 1월말까지)
2.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후관리결과(익년도 1월말까지)
3. 기금사업 지원현황(해당연도 12월말까지, 12월 25일 기준)
4. 공업발전법, 동법시행령, 산업기반기금운용규정 또는 산업기반기금운용·관리요령에 위반되어 기금이 운용되는 경우 그 내용(위반내용 인지후 1개월 이내)

5.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
②취급은행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
은행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대여약정서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
2.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산업기반기금집
행내역(분기종료후 10일 이내, 당해연도
및 전년도 구분)

3. 금리변경시 지원부문별 적용이자율(이자율
변경일 이후 1개월 이내)

4. 기타 관리은행장이 요청하는 사항”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